

2023. 10. 23(목). 10:00  
제29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

# 검 토 보 고 서

< 안건명 >

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도시교통위원회  
전 문 위 원

# 남양주시 자율방법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안경위

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1일 김동훈 의원 등 8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「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1조에 따라 2023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임.

### 2. 제안이유

「자율방법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자율 방법대 및 자율방법연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를 정비함. (안 제1조 ~ 안 제2조)

나. 자율방법대 및 자율방법연합대 예산지원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.  
(안 제5조)

다. 자율방법대 및 자율방법연합대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 
(안 제6조)

라. 자율방법대 및 자율방법연합대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.  
(안 제7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관계법령 : 덧붙임
- 나. 2023년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현황 : 덧붙임
- 다.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예산지원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  
(안 제5조) 관한 보조금 집행범위 : 덧붙임
- 라. 입법예고 결과 ( '23. 10. 11. ~ 10. 17.) : 의견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(안)는 지역의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(자율방범연합대)의 필요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‘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’에 근거토록 개정한 사항으로,
- 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, 예산지원, 지원대상, 지원중단 조항 수정 및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 됨.

2023년 10월 18일  
전문위원 윤 선 기

**제1조(목적)**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·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·범죄예방·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자율방범대”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.
2. “자율방범대원”이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.
3. “자율방범대장”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.

**제3조(조직 및 구성 등)** ① 자율방범대는 읍·면·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인구·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다.

② 자율방범대에는 대장, 부대장, 총무 및 대원을 둔다.

③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조직,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**제4조(신고)** ①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, 활동구역,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자율방범대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다.

1.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
2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4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5호가목1)·2)·3)·7)·8)·9)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·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

② 경찰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.

**제6조(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)** ①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장(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)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②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

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하여야 한다.

③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중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거나 그 활동을 태만히 하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**제7조(자율방범활동)**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(이하 “자율방범활동”이라 한다)을 한다.

1.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
2. 청소년 선도 및 보호
3. 시·도경찰청장·경찰서장·지구대장·파출소장(이하 “시·도경찰청장등”이라 한다)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
4.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장·면장·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

**제8조(복장·장비 등)**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때에는 자율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.

② 자율방범대원은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자율방범대 차량에 경찰과 유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차량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.

④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, 복장, 경광등 및 차량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**제9조(지도·감독)** 시·도경찰청장등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·감독한다.

**제10조(교육·훈련)** ① 시·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·훈련의 내용, 주기,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**제11조(포상)** 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장·면장·동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**제12조(중앙회·연합회·연합대 설립 등)**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(이하 “중앙회”라 한다)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시·도자율방범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 및 시·군·구에 시·군·구자율방범연합회(이하 “연합대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중앙회는 경찰청장에게, 연합회는 시·도경찰청장에게, 연합대는 경찰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③ 중앙회, 연합회 및 연합대(이하 “중앙회등”이라 한다)의 조직·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**제13조(중앙회등의 지도·감독)**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

에 따라 경찰청장은 중앙회, 시·도경찰청장은 연합회, 경찰서장은 연합대의 운영 등에 대하여 각각 지도·감독한다.

**제14조(경비 등의 지원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·장비의 구입, 교육·훈련,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·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5조(금지의무)**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
2. 영리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
3. 소송·분쟁·쟁의에 참여하는 행위
4.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

② 자율방범대·중앙회등(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포함한다)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(「공직선거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6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**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 아니면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7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**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**제18조(벌칙)**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「공직선거법」 제25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.

**제19조(과태료)** ① 제16조를 위반하여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## 붙임2

## 2023년 자율방범대 현황

자료 : 남양주시>시민안전관>민방위팀

구분	방법대 명칭	대원수	초소위치	순찰 방법	비고
	남양주남부방범연합대(22개대)	30	왕숙천마을회관 3층	차량	
	남양주북부방범연합대(16개대)	-	미통보	-	신설
	남양주해병전우회(8대)	24	(구)금곡배수지	차량	
	남양주남부경찰서외국인자율방범대	26	없음	도보	
와부읍 (3)	와부자율방범대	53	와부파출소 옆	차량	
	와부여성방범대	33		도보	
	와부해병전우회	24	덕소배수펌프장 옆	차량	
진접읍 (5)	장현자율방범대	39	장현리 키즈웨일즈 옆	차량	
	내각자율방범대	29	내각리 공임나라 옆	차량	
	광릉자율방범대	22	854정비중대 입구	차량	
	해밀자율방범대	26	진접푸른숲도서관 입구	차량	
	진접해병전우회	27	왕숙천 충전소 옆	차량	
화도읍 (6)	가곡3리자율방범대	27	가곡3리 마을회관	도보	
	송라자율방범대	20	마석2리 마을회관	차량	
	가곡1리자율방범대	-	금빛어린이집 앞	도보	
	묵현자율방범대	-	동명하우스 초입	차량	
	녹촌자율방범대	-	녹촌지점 농협	차량	
	화도해병전우회	21	그랜드마트 뒷편	차량	

진건읍 (4)	용정자율방법대	25	진건파출소 옆	차량	
	승능2리자율방법대	-	적성교 인근 도로 옆	차량	
	배양2리자율방법대	23	배양2리 마을회관	도보	
	배양1리자율방법대	-	은성냉동 앞	차량	
오남읍 (2)	오남자율방법대	37	오남119안전센터 옆	차량	
	오남해병전우회	39	오남체육공원 입구 왼쪽	차량	
퇴계원읍 (2)	퇴계원자율방법대	32	공원부지 (퇴계원3호공원)	차량	
	퇴계원해병전우회	32	퇴계원도서관 맞은편	차량	
별내면	별내면자율방법대	25	별내면 자치센터 옆	차량	
수동면	수동자율방법대	31	수동교 옆	차량	
조안면	조안자율방법대	15	농업인상담소 2층	차량	
호평동 (2)	호평자율방법대	26	호만프라자 옆	차량	
	호평여성방법대	26	호평동사무소 부설주차장	도보	
평내동 (2)	평내자율방법대	22	34통마을회관 옆	차량	
	평내여성방법대	32		차량	
금곡동 (3)	금곡동자율방법대	32	금곡파출소 옆	차량	
	금곡여성방법대	26		차량	
	금곡해병전우회	25	명지해드너터 맞은편	차량	
다산1동 (2)	다산1동자율방법대	52	왕숙천마을회관 3층	차량	
	다산해병전우회	41	다산파출소 옆	차량	
다산2동	다산2동자율방법대	46	다산파출소 옆	차량	
별내동	별내동자율방법대	29	별내동파출소 앞	차량	

### 붙임3

###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보조금 집행범위

자료 : 남양주시>시민안전관>민방위팀

구 분		집 행 범 위
야 식 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순찰자를 위한 야식 또는 식사비</li> <li>■ 순찰자를 위한 컵라면, 커피 등 야식(식재료) 구입비</li> <li>※ 월 정례회 등 개최 후 식사비</li> </ul>
차량 구입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차량구입비용만 집행가능</li> <li>※ 차량보험료, 등록·취득세 등은 자부담</li> </ul>
범죄예방 교육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전문교육 업체 이용가능</li> <li>※ 교육과 관련없는 식사비로 사용 불가</li> </ul>
소모성운영비	출 동 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순찰차량 유류비</li> <li>■ 차량 부품교체 및 차량보험료 등</li> </ul>
	초소운영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초소 전기·수도·통신요금 및 초소난방비</li> <li>■ 초소난방비, 소규모 수리비 등</li> <li>※ 위성TV수신료는 제외</li> </ul>
	소모성물품 구입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교통신호봉 및 호각, 곤봉 등 순찰물품 구입비</li> <li>■ 순찰활동에 따른 소모품이나 문구 구입비</li> <li>■ 순찰장비(무전기 등)의 수리비 포함</li> </ul>
	피복구입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안전조끼, 모자 등 구입비</li> <li>※ 근무복은 방범연합대에서 일괄 구입</li> </ul>